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고문변호사 위촉제한과 해촉사유,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하여 고문변호사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1)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고문변호사 위촉제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 고문변호사 임기 변경(안 제4조제1항)

1) 1년 ⇒ 2년

라. 고문변호사 해촉 근거 신설(안 제5조)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마. 이해충돌행위 금지 사항 신설(안 제6조)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 또는 자문을 하거나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과 시기 변경(안 제9조)

1) 지원금액 : 5천만원 ⇒ 2천만원

2) 지원시기 : 판결 이후 지급 ⇒ 피소 이후 지급

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8,200천원 확보

다. 합　　의 : 예산담당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27.~2019. 1.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2.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같은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 사건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7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자문 실적부(　　월)

종　　류	의뢰 연월일	의뢰내용	회신 연월일	회신내용	비 고
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그 밖의 자문사항”으로 기재함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자문수당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소송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20,000
	총 계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3. 관련 의견 : 고문변호사 위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 태 정